

가스보일러 시공시 하자담보에 관한 법령 및 규정

◆ 건설산업기본법 관련조항

제28조 (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)

-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·철근콘크리트구조·철골구조·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,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, 기타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.[가스보일러 하자담보기간: 1년]
- ②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.
 - 1.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
 - 2.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
 - 3.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
- ③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법령(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)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44조 (건설업자의 손해배상 책임)

- ①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- ② 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- ④ 수급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◆ 도시가스공급규정 관련조항

● 서울시 공급규정

제13조 (시공기록 교부 및 연소기 등의 연결)

- ① 제12조제1항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사용시설(온수보일러 등 그 부대시설 포함)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시공자는 그 시공기록 및 도면(온수보일러 설치공사의 경우 온수보일러 설치확인서 및 사진)을 작성하여 당사에 교부하여야 하며,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제44조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수요자에게 하여야 합니다.
- ② 가스사용기를 설치(교체를 포함) 한 후 처음으로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당사에 공급을 요청하여야 하며, 당사는 점검을 실시하여 시공상태가 제규정에 적합하며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공급 요청일로부터 1일이내에 가스를 공급합니다.

● 경기도 공급규정

제15조(시공기록 교부 및 연소기 등의 연결)

- 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스사용시설공사를 완료한 시공자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 규칙 제20조의 제반규정에 의한 시공기록 및 도면(온수보일러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설치확인서 및 사진)을 작성하고 그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공급전안전점검이 끝난 후 가스연소기를 설치(가스소비량의 변동을 수반하는 기종으로 연소기를 교체한 종전의 수요자를 포함한다)하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를 받은 회사는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.
- ③ 가스보일러 등(온수기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)을 설치한 자가 관밀연결공사를 시행코자할 경우 제1항의 시공기록을 회사에 제출하고, 하자이 행보증증권 및 손해배상책임보험증권 등을 수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, 회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전안전점검시 시공자가 하자이행보증증권 등을 수요자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가스보일러시공자 보험가입의무화 제도시행

◆ 도시가스사업법 개정(2003. 5. 27 법률 제6886호)으로 가스보일러 시공자에 대한 보험가입 이의무화됨.

▶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(보험가입) ①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사용하는 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1. - 생략
 2. - 생략

3.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공자

※ 보험가입 위반자 과태료 500만원 부과

- ▶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②법 제43조1항3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는 온수보일러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를 하는 자로 함

※ 도시가스사업자가 온수보일러 및 부대시설에 가스를 쳐움 공급하는 경우 시공자의 보험가입여부확인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해 포함시켜야 함(별표11)

※ 시행규칙 제64조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는 3억원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.

※ 시행규칙 제64조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는 3억원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

◆ 기준보증금 : 대출대상 시장 1인당 8만원 / 개인파동 3억원 금위대 / 무임차 1인당 1천만원

▶ 보험기간 : 1년

▶ 보험기간 연장·유급·폐업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을 정산하지 않는 경우 보험증권면허를로부터 (12개월 연장)

(보험료 미납 등 보험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 된 경우는 제외 됨)

▶ 주제학관 :

- 가스시설사용 작업 노동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혜택 가능
 - 사업 양도 시에도 보험이 승계됨

가스보일러 배기통 성능 인증 스티커 크기변경 알림

지난 9.19(금) 개최한 2008년 가스보일러 사고예방대책 실무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, 가스보일러시설 안전점검 및 동 사고예방대책 추진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, 귀 회원사 및 시공사 등에게 가스보일러 배기통 설치시 동 스티커를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건의사항	변경전	변경후	비고
가스보일러 배기통 성능인증 스티커크기(15mm X 15mm)가 작아 식별이 곤란하여 크기 확대 또는 여러 장 부착할 수 있도록 개선요망	15mm X 15mm	30mm X 30mm	공사 성능인증업무지침 개정 (개정일: 2008. 11. 03)

가스보일러 오인연결 방지 개선방안

가스보일러 오인 연결에 따른 가스공급 중단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선방안을 알려드리오니,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배경

- 가스보일러 설치 시 가스관과 급수관을 잘못 연결하여 가스공급이 중단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함.

2. 현실태 및 문제점

- 가스관과 급수관을 구분 표시하기 위하여 스티커 또는 Tag를 부착하여 제품을 출하하고 있으나 쉽게 떨어지거나 제거됨.
- 협소한 장소에 가스보일러 설치 시 표시사항이 훼손되었을 경우 가스관과 급수관의 오인 연결 가능성 이 상존함.

3. 개선방안

■ 가스안전공사 추진사항

○ KGS Code 개정 추진

가스보일러 바닥면 배관연결부 주위에 “가스”, “급수” 등을 양각 또는 음각 글자로 표시하고 가스 관 전용마개를 황색을 설치토록 표시방법. *관련 Code: KGS AB131(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기준) 및 KGS AB133(자연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기준)

○ 가스보일러 제조사 간담회 개최

표시방법 보완에 대하여 제조사 의견을 수렴하고 최정(안)확정.

■ 도시가스 추진사항

○ 공급전 안전점검 기준 개정

가스관 및 급수관의 연결 상태를 철저히 확인토록 공급전 안전점검 세부 기준 마련(도시가스사 내규 개정)

○ 공급전 안전점검 철저 및 시공자 감독 강화

가스관과 급수관을 잘못 연결한 상태에서 가스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급전 안전점검을 확실히 하고 시공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

■ 시공 관련 협회 추진사항

○ 법정교육 철저 및 회원사 홍보 실시

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5조에 따른 난방시공업 법정교육(주기 3년)시 가스관과 급수관을 오인 연결 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교육 실시

회원사 정기 Workshop 및 원간지에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

○ 연소기 전용 금속플렉시블 호스 사용 의무화 안내

2011년 4월부터 연소기용 배관용 금속플렉시블 호스를 구분 제조토록 의무화 되므로 가스보일러 시공 시 내열성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토록 회원사에 안내.